

2018년 중국 필름비즈니스센터 입주지원 사업요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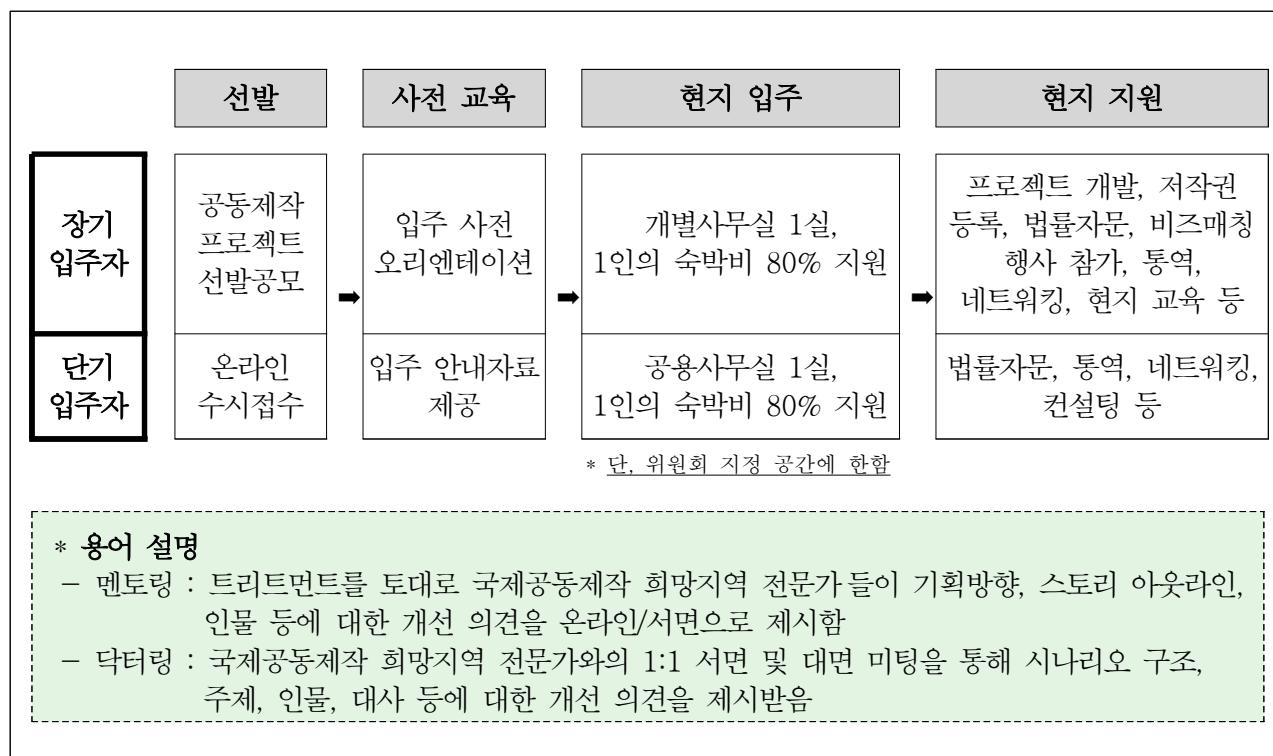
1. 사업목적

- 가. 중국과의 공동제작프로젝트 기획개발을 지원하여 국제공동제작 활성화 유도
- 나. 기획개발단계에서 멘토링, 시나리오 번역, 현지 비즈미팅까지 포함한 원스톱 지원
- 다. 창작자 현지 거주를 통해 문화·사회적 이해도 제고 및 교류, 투자유치 기반 마련

2. 2017년 대비 주요 변경내용

구 분	현행('17)	변경안('18)
신청대상	영화제작사, 저작권을 보유한 개인	IP(시나리오, 웹툰, 웹소설, 리메이크 등) 보유업체 및 개인
신청서류	시나리오 제출 의무	시나리오 제출 의무 삭제

3. 사업내용



가. 장기입주자 선정 및 지원

1) 선정내용

- o 신청자격 : 중국과의 공동제작영화화(극장용 애니메이션 포함) IP(시나리오, 웹툰, 웹소설, 리메이크 등)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및 개인
※ 법인사업자 혹은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 사업등록증 제출

o 이용기간 : 입주사별 4개월 (1차-'18년 1월~4월 / 2차-5월~8월 / 3차-9월~12월)

o 선정방식 : 입주신청서, 트리트먼트 등을 토대로 별도의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결정

o 선정편수 : 총 6편 이내

o 신청기간

- 1차 : 2017.11.16.(목)~11.30.(목)
- 2차 : 2017.03.05.(월)~03.16.(금) 예정
- 3차 : 2017.07.02.(월)~07.13.(금) 예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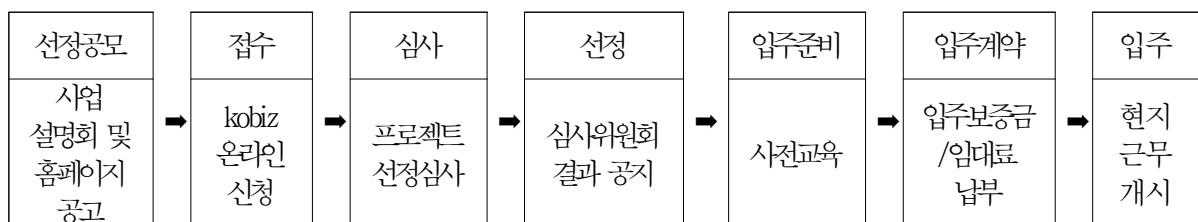
o 신청방법 : 위원회 해외정보 웹사이트(www.kobiz.or.kr)에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

※ 해외진출 지원사업 → 사업신청 → 중국필름비즈니스센터 장기입주 신청

o 신청서류

- 장기 입주신청서(온라인 작성) 1부
- 제작계획서 1부(소정양식)
- 신청작품의 트리트먼트(7매 이내)
- 영화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(해당업체)
- 저작권(판권) 보유 확인서 1부

o 선정 및 입주절차



2) 지원내용

구 분	상세내용	비고
사무공간	입주사별 개별사무실 1실	
거주공간	입주사별 1인의 위원회 지정 숙박공간 숙박비 80% 지원	
프로젝트 개발	멘토링, 시나리오 번역 1회, 닉터링, 수정시나리오 번역 1회	
비즈매칭 행사	현지 영화관계자와의 투자유치 비즈니스 미팅 행사 참가 (Ko-production in Beijing)	비즈매칭 수시지원
법률 자문서비스	중국 내 업무추진과 관련된 전문 법률 자문서비스 (업체별 연간 최대 5시간 제공)	
저작권 등록서비스	입주 프로젝트의 현지 저작권 등록 지원	
비즈니스 통역	현지 비즈니스 미팅 진행 시 위원회 지정 전문통역 지원 (업체별 연간 반일 3시간 기준 총 6회까지 지원)	
현지 교육 및	현지 교육 프로그램 운영, 네트워킹, 컨설팅, 프로젝트	

네트워킹	전담인력 지원 등	
------	-----------	--

※ 프로젝트 개발 지원

- 멘토링 : 입주자 프로젝트의 작품 정보, 트리트먼트 번역 및 현지 전문가의 대면/서면 멘토링 지원
- 시나리오 번역 : 지원대상 프로젝트의 완성 시나리오 번역 1회 지원
- 시나리오 수정번역 : 입주 프로젝트 개발에 다른 시나리오 변경부분 번역 1회 지원
 - * 입주자는 시나리오 번역 편당 최대 3,000,000원 이내, 개발에 따른 시나리오 수정번역 편당 최대 1,500,000원 이내 번역 실비 지원. 초과비용 입주자 개별 부담
- 닉터링 : 완성 시나리오 단계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현지 시장에 적합한 형태로 수정하기 위해 시나리오 닉터와의 대면/서면 닉터링 지원
- 지원절차 : 현지 입주 시 개별 신청

※ 저작권 등록 서비스 지원

- 주요내용 : 입주자 프로젝트 중국판권보호중심(CPCC) 저작권 등록 대행 및 등록비 지원

※ 법률자문서비스 지원

- 주요내용 : 입주 프로젝트 계약 체결 등 관련 법률컨설팅 진행(통역 포함)
- 지원시간 : 연간 업체별 최대 5시간까지
- 지원절차 : 현지 입주 시 개별 신청

※ 비즈매칭 행사(KO-Production in Beijing) 참가 지원

- 주요내용 : 현지 영화관계자와의 투자유치 등 비즈니스 미팅 행사 개최 참가
- 개최시기 : 3월, 6월, 10월(예정)
- 지원절차 : 현지 입주 시 개별 신청

※ 통역 지원

- 주요내용 : 현지 영화관계자와의 투자유치 등 비즈니스 미팅 진행에 따른 전문통역 지원
- 지원횟수 : 연간 반일 3시간 기준 총 6회
- 지원절차 : 접수(kobiz 온라인 신청) → 심사 → 승인 → 현지 이용 → 온라인 결과보고

3) 입주자 비용부담

o 부담원칙 : 현지 사무공간 및 거주공간 지원에 따른 비용 분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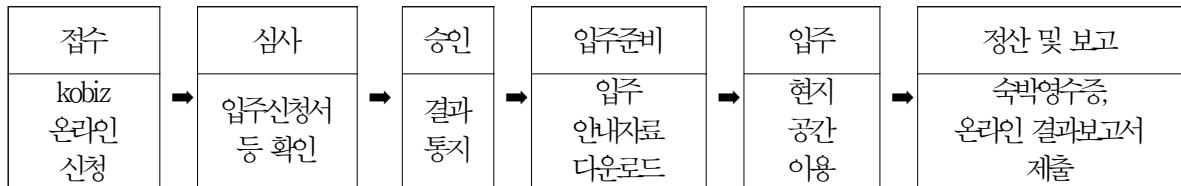
o 비용내역

구 분		입주자	지급방식	비 고
입주전	입주보증금	200만원	선납	추후 정산 후 환불
입주후	숙박비용	총비용의 20% 부담	후불	숙박기간에 따라 부과
	전기료	총비용의 20% 부담	후불	업체별 균등 부과
	전화비	사용료 업체별 부담	후불	
기타비용		팩스비, 인터넷비 등 위원회 부담		

나. 단기입주자 선정 및 지원

1) 선정내용

- o 신청자격 : 중국과의 공동제작영화화(극장용 애니메이션 포함) IP(시나리오, 웹툰, 웹소설, 리메이크 등)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및 개인
 - ※ 법인사업자 혹은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 사업등록증 제출
- o 이용기간 : 입주사별 1회 최대 15일, 연간 30일 이내
- o 선정방식 : 입주신청서 등을 토대로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 결정
- o 입주가능업체수 : 3개 업체 동시입주 가능(온라인신청시 단기입주자 예약스케줄표 참고)
- o 신청기간 : 수시접수(최소 3일 전 신청)
 - ※ 단, 법률자문 서비스 신청 예정자는 최소 15일 전에 신청해야 함.
- o 신청방법 : 위원회 해외정보 웹사이트(www.kobiz.or.kr)에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
- o 신청서류
 - 단기 입주신청서(소정양식, 온라인으로 작성) 1부
 - 미팅 대상 외국업체와 교환한 증빙파일(이메일, 메신저프로그램, 문자 등 사본 1부)
 - ※ 미팅 대상 업체명, 연락처 및 미팅 일정내역이 포함된 증빙자료이어야 함.
 - 영화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(해당업체)
- o 선정 및 입주절차



2) 지원내용

구 분	상세내용	비고
사무공간	입주사별 공용사무실 1실	비즈 매칭 수시 지원
거주공간	입주사별 1인의 위원회 지정 숙박공간의 숙박비 80% 지원	
법률 자문서비스	입주 프로젝트 법률컨설팅 진행	
통역	현지 비즈니스 미팅 진행 시 위원회 지정 전문통역 지원	
현지 네트워킹	네트워킹, 컨설팅 등	

* 법률자문서비스 지원

- 주요내용 : 입주 프로젝트 계약 체결 등 관련 법률컨설팅 진행(통역 포함)
- 지원시간 : 연간 업체별 최대 5시간까지
- 지원절차 : 현지 입주 시 개별 신청
- 기타사항 : 단기 입주자 법률자문서비스는 관련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

* 통역 지원

- 주요내용 : 현지 영화관계자와의 투자유치 등 비즈니스 미팅 진행에 따른 전문통역 지원
- 지원횟수 : 연간 반일 3시간 기준 총 6회
- 지원절차 : 접수(kobiz 온라인 신청) → 심사 → 승인 → 현지 이용 → 온라인 결과보고

3) 입주자 비용부담

- 부담원칙 : 현지 사무공간 및 거주공간 지원에 따른 비용 분담
- 비용내역 : 입주기간 숙박비용의 20%

다. 공동제작 활성화 비즈매칭 행사 Ko-Production in Beijing 개최

- 1) 사업목적 : 비즈니스 미팅 행사 개최를 통한 중국 필름비즈니스센터 장기입주 프로젝트의 현지화 및 투자유치, 네트워킹 기회 확대
- 2) 지원대상 : 장기입주자
- 3) 지원내용 : 선발 프로젝트의 국제공동제작 현지 행사 참가 및 비즈니스미팅 지원
- 4) 세부일정

사업명	시기	비고
Ko-Production in Beijing 1차	3월 말(예정)	
Ko-Production in Beijing 2차	6월 말(예정)	
Ko-Production in Beijing 3차	10월 중순(예정)	

4. 기타사항

가. 지원신청의 제한

- 장기입주 신청자는 신청 시 2개 작품 이상 신청 불가
- 위원회 ‘중국 필름비즈니스센터’ 및 ‘국제공동제작 기획개발 지원’ 사업에 기 선발된 바 있는 동일 프로젝트는 재신청 불가
- ‘국제공동제작 비즈매칭 지원’, ‘KO-PRODUCTION in BUSAN’ 등 위원회 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프로젝트로 국제공동제작 대상 국가가 중국이었던 프로젝트는 번역지원에 있어 수정시나리오 번역(최대 150만원)만을 지원
- 위원회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한 중에 있거나 기 지원결정 후 취하(취소)된 작품 및 지원대상자
- 영화 스태프 등에 임금 체불로 인하여 분쟁 중이거나 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 및 제작사 관련자(대표자 등)
-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원대상자
-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자는 지원신청 접수시작일 이전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하여야 지원신청 가능

나. 선정 취소

- 지원신청 시 허위사실 기재 또는 저작권 침해 및 표절로 민/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
- 지원결정 후 위원회 제재조치 대상의 작품 및 대상자로 판명된 경우
- 지원대상자의 사업 수행능력 상실 또는 제작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
- 지원사업 선정자가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

(성범죄로 기소중이거나 재판중인 경우에도 향후 벌금형 이상의 유죄확정 판결이 확정될 경우 포함)

- 장기입주 계약서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위원회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등

다. 의무사항

- 입주자는 입주계약기간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센터에 입주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 입주일 연장을 고려할 수 있다.
- 입주자는 입주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또한 입주기간동안 매월 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월간 추진실적 등 현지 활동과 관련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과견업무 수행 및 현지생활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으며,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위원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입주자는 입주공간 및 거주공간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거나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라. 기타

- 중국 한한령으로 인한 피해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업체 지원 시 우대
- 상기 사유로 선정 취소될 경우 위원회에서 지원한 사무/숙박공간 비용, 전기료, 전화비 등 일체의 관련비용을 변상토록 함
- 선정 편수 및 일정 등 입주자 선정과 관련된 사업내용은 위원회 및 현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, 취소될 수 있음
- 선정자는 성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(별도양식)를 제출하여야 함 (선정자가 추후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추후 확인되거나, 기소 및 재판중인 선정자가 향후 벌금형 이상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원사업 대상에서 취소될 수 있음)